#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3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민병덕·진성준·이광희

박 정・박민규・윤후덕

서미화 • 위성곤 • 정준호

김남희 • 권칠승 • 김태선

이재정 · 정진욱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직면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음. 그런데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은 여전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장기 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

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협의를 하도록 함 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중 "유예"를 "유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다른 장기분할상환"으로 한다.

- ② 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시행 기간 중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기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상환 유예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분할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관계 금융기관과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분할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시행 기간 중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
환 <u>유예</u> ) ① (생 략)	환 <u>유예 등</u> )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
	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시행
	기간 중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
	라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
	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
	기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상환
	기간 연장・상환 유예 및 제2
	항에 따른 장기분할상환이 원
	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원 및 관계 금융
	기관과의 협의 등을 적극적으
	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
<u>장 및 상환 유예</u> 의 기준 및 절	<u>장·상환 유예 및 제2항에 따</u>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른 장기분할상환
령으로 정한다.	